2023년도 제2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3. 9. 12.(화요일), 10:30

o 장　　소: 대면 심의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2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92건(안건번호 제2023-159925호~1637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59925호는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redacted]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인물 소개, 개인의 생각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 점,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9926호~159927호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9928호~15994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9942호~159953호는 [redacted]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9954호~159964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56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2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63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2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민원인이 신고한 것인가?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의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요청한 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를 살펴보니 게시자가 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올리면 안되는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음. 게시자는 디자인 등 미술을 전공한 입장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도시 주변의 경치를 스케치하고 그리는 걸 주로 올렸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 내용 중에 관심사가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올린 것이며, 이외의 다른 게시물들에는 이렇게 영상물 자체가 올라와 있지는 않음. 나쁜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 점에서 경고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C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가결 처리를 할 정도로 침해가 있는 사안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를 살펴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영상 저작물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광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음. 따라서 경고조치까지 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임. 그런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가져온 것이 확실한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동일함.

- E 위원: 보호원의 취지가 보호하는 어떤 목적 그 다음에 확산 방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보호원에서 경고조치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며

이렇게 퍼블릭한 것은 우리가 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임.

- D 위원: 부결을 하려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나와야 함. 공정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시장 대체 가능성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복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아서 ■■■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태로 올린 것임.

- A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심의한 추세를 보면 꼭 공정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정권고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의결하고 있음. 위원님들 중에는 개입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강력하게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심.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59925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의결정족수 1대 4로 안건번호 제2023-159925호는 인물 소개, 개인의 생각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 점,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26호~15992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59926호~15992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59926호~15992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28호~15994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59928호~15994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59928호~15994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42호~15995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59942호~15995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59942호~15995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54호~159964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안건번호 제2023-159954호~15996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59954호~15996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65호~16371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일반영상, 만화/웹툰,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출판/어문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9992호('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는 2023.05.04.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인트에 판매중임.
('무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62024호('무빙')는 2023.08.09.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360포인트에 판매중임.
('신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3-162243호('신병')는 2023.08.28. ~09.12. 방영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610포인트에 판매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159965호~16371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59965호~16371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59925호는 부결하고, 제2023-159926호~159927호, 제2023-159942호~159953호, 제2023-159954호~159964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159965호~16371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19.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